

# 승강기 안전관리법

단 | 원 | 열 | 기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매년 2문제가 출제되는데, 정의,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확보, 승강기유지관리업(등록 및 업무), 승강기의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승강기의 안전관리자, 사고보고, 승강기의 자체점검 등을 중점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01 총 칙

02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03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04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05 보 칙

## 제1장 총 칙

### 1 목적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 2 용어의 정의

#### (1) 승강기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영 제3조).

- ① 엘리베이터 : 일정한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구(運搬具)를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 ② 에스컬레이터 :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 ③ 휠체어리프트 : 일정한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통해 휠체어에 탑승한 장애인 또는 그 밖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2) 승강기의 세부종류

위 (1)에 따라 구분된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는 다음과 같다(규칙 제2조 별표 1).

① 구조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구분	승강기의 세부종류	분류기준
엘리베이터	전기식 엘리베이터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運搬具)가 구동기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유압식 엘리베이터	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가 유압잭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형의 발판이 구동기에 의해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평면형의 발판이 구동기에 의해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휠체어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운반구(이하 “휠체어운반구”라 한다)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휠체어운반구가 구동기나 유압잭에 의해 수직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휠체어리프트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휠체어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휠체어운반구가 구동기나 유압잭에 의해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휠체어리프트

② 용도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구분	승강기의 세부종류	분류기준
엘리베이터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전망용 엘리베이터	승객용 엘리베이터 중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외부를 전망하기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병원용 엘리베이터	병원의 병상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건축법」 제64조 제2항 본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를 말한다)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피난용 엘리베이터	화재 등 재난 발생시 거주자의 피난활동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주택용 엘리베이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거주자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왕복 운행거리가 12미터 이하인 엘리베이터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가 탑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적재용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운전자가 탑승한 자동차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Dumbwaiter)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을 금지하는 엘리베이터(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에스컬레이터	승객용 에스컬레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장애인 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에스컬레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에스컬레이터로 사용하는 에스컬레이터

	승객화물용 에스컬레이터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승객용 무빙워크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승객화물용 무빙워크	사람의 운송과 화물의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장애이용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운반구가 수직로를 따라 운행되는 것으로서 장애인 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장애이용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운반구가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것으로서 장애인 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3) 승강기로 보지 않는 시설

다음의 시설은 승강기로 보지 아니한다(영 제2조).

- ① 「궤도운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궤도
- ② 「선박안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중 승강설비
- ③ 「주차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 ④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람을 운반하거나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捲揚)장치
- 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리프트
- ⑥ 주한외국공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설치된 승강기 등 국제협약 또는 국가간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강기

### (4) 기타 용어

- ① **승강기부품**: “승강기부품”이란 승강기를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 ② **제조**: “제조”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설치할 목적으로 생산·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설치**: “설치”란 승강기의 설계도면 등 기술도서(技術圖書)에 따라 승강기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장착(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④ **유지관리**: “유지관리”란 제28조 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의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 ㉠ 주기적인 점검
- ㉡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 ㉢ 승강기부품의 교체
-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⑤ **승강기사업자**: “승강기사업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제6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 ㉡ 제39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業)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설치공사사업자”라 한다)

⑥ **관리주체**: “관리주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승강기 소유자
- ㉡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 ㉢ ㉠ 또는 ㉡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 3 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1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2항).

#### 4 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 ①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제조·수입 또는 설치하거나 유지 관리할 때 이 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등을 준수하여 승강기 이용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4조 제1항).
- ②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법 제4조 제2항).

####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승강기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법 제5조 제1항).
- ② 승강기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5조 제2항).

#### 6 승강기안전위원회

##### (1) 위원회의 구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승강기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영 제5조 제1항).

- ㉠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 ㉡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 ㉢ 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 ㉣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 지정
- ㉤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 지정
- ㉥ 법 제65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
- ㉦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중요 정책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영 제5조 제2항).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영 제5조 제3항).

- ㉠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 ㉡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 ㉢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중에서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회 위원(제3항 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영 제5조 제4항).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영 제5조 제5항).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영 제5조 제6항).
-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영 제5조 제7항).

##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 (1) 등록

- ① 승강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6조 제1항).
- ②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법 제6조 제2항, 영 제10조).

- ㉠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억원 이상일 것
- ㉡ 제8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별로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 것

- ③ 변경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3항).
- ④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수입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4항).

## (2) 등록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법 제7조).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⑤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① 또는 ②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⑥ 대표자가 ①부터 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3)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 ①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제39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관리주체를 포함한다)에게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기간 등이 적힌 품질보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8조 제1항, 영 제11조 제2항, 영 제12조).

-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유지관리를 부품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 ㉡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비밀번호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 ㉔ 제39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다음의 조치
  - ㉑ 기술지도 및 교육의 유상 또는 무상 실시
  - ㉒ 유지관리 매뉴얼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제공 또는 인쇄물 제공)
  - ㉓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

- ☞ **참고**: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방법
1. 제조·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
  2. 영상녹화물을 활용하는 시청각 교육
  3. 교재 및 참고자료를 활용하는 서면 교육

② 제조·수입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부터 위 ①의 ㉑ 또는 ㉒에 해당하는 부품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법 제8조 제2항, 영 제11조 제1항).

- ㉑ 관리주체
- ㉒ 제39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 ㉓ 제39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③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며, 그 기간에 구매인 또는 양수인이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이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수입업자가 무상으로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 등을 제공(정비를 포함한다)해야 한다(영 제11조 제3항).
- ④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부품(유지관리용 부품으로 한정한다)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를 10년 이상 해당 제조·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는 그가 가입한 협회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으며, 제조·수입업자는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를 매년 갱신해야 한다(영 제13조).
- ⑤ 시·도지사는 ① 및 ②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는 그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조·수입업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법 제8조 제3항, 영 제14조).

**(4)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조·수입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 또는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1항).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
- ㉡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경우
- ㉢ 제6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3)의 ③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8조 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를 잘못된 경우
  - ㉡ 제조가 잘못된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수입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①의 ㉢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9조 제2항).

**(5)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시·도지사는 (4)의 ㉣·㉤ 또는 ㉥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10조 제1항).

② 시·도지사는 ①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제조·수입업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법 제10조 제2항).

##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 1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 (1)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 ① 승강기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승강기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
- ② **부품안전인증의 내용**: 부품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심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영 제17조).

- ㉠ 설계심사: 승강기안전부품의 기계도면, 전기도면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도서(技術圖書)가 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이하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것
- ㉡ 안전성시험: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하는 것
- ㉢ 공장심사: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체계가 법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이하 “부품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것

- ③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1조 제2항, 규칙 제14조 제5항).

- ㉠ 승강기안전부품에 사용된 변압기 2차측(교류전원 30볼트 이하 또는 직류전원 42볼트 이하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회로·승강기부품·절연재질의 변경 또는 연소방지를 위한 재질 변경의 경우
- ㉡ 승강기안전부품의 색상 변경의 경우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의 기준에 모두 맞는 경우 부품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의 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고시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법 제11조 제3항).

- ㉠ 승강기안전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 ㉡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 ④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담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법 제11조 제4항, 규칙 제16조).

- ㉢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실시
- ㉣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도록 보완
- ㉤ 공장의 설비가 부품공장심사기준에 맞도록 보완
- ㉥ ㉠부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건의 이행 보고

## (2)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1)의 ①에도 불구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9호 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다음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법 제12조, 영 제18조 제3항·제4항, 규칙 제17조 제1항·제20조).

- ① 연구·개발, 전시 또는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 ②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다음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 ㉠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않는 부품으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 ㉡ 수출한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승강기안전부품
- ③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경우
- ④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에서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시험을 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 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을 일회성(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가 20개 이하의 승강기안전부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하여 한 번에 통관하거나 출고하는 경우로 한다)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 ⑦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 ① **정기심사**: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심사(부품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부품정기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제1항에 따른 부품정기심사의 심사주기 도래일 45일 이전에 부품정기심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부품정기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13조 제1항, 영 제19조 제1항·제3항, 규칙 제22조 제1항·제4항)

#### 부품정기심사의 확인사항

1.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는지 여부
2.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체계가 부품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 여부
3.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실시 및 그 기록의 작성·보관 여부
4. 그 밖에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자체심사**: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2항, 규칙 제23조 제2항).
- ③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 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규칙 제22조 제7항).

- ㉠ 부품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자
- ㉡ 자체심사를 하지 않은 자
- ㉢ 자체심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4)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부품안전인증 표시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법 제14조 제1항).

- ㉠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 ㉡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 부품안전인증 면제의 표시

② 부품안전인증표시 등을 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규칙 제24조 제2항).

- ㉠ 국내에서 제조하는 승강기안전부품: 출고 전
- ㉡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통관 전

③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그 포장에 부품안전인증표시 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4조 제2항).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4조 제3항).

- ㉠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 ㉡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 ㉢ 승강기안전부품의 대여업자
- ㉣ 승강기안전부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승강기부품을 제조하는 자
- ㉤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 ㉡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 ㉢ 설치공사업자
  - ㉣ 승강기안전부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⑤ 위 ④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부품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법 제14조 제4항, 규칙 제24조 제3항).

- ㉠ 부품안전인증표시 등                      ㉡ 부품안전인증번호
- ㉢ 승강기안전부품명 및 모델명            ㉣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5)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부품안전인증표시 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부품안전인증표시 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법 제16조 제1항).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 부품안전인증표시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 제11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제13조 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 제13조 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결과 제11조 제3항 제2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 ㉨ 제25조 제1항 또는 제2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부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품안전인증표시 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①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부품안전인증표시 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①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이 취소된 승강기 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법 제16조 제2항·제3항).

## 2 승강기의 안전인증

### (1) 승강기의 안전인증

-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별(승강기의 모델은 승강기를 구별하기 위해 모델 구분 기준에 따라 설계 및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승강기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명칭)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모델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에 관한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법 제17조 제1항, 규칙 제26조).
- ② **승강기 안전인증의 내용**: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가 위 ①에 따라 모델별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심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영 제20조).

- ㉠ 설계심사: 승강기의 기계도면, 전기회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도서가 법 제17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이하 “승강기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것
- ㉡ 안전성시험: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하는 것
- ㉢ 공장심사: 승강기를 제조하는 공장의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체계가 법 제1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이하 “승강기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것

- ③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위 ①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7조 제2항).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위 ①의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는 승강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의 기준에 모두 맞는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았거나 고시된 승강기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강기제조·수입업자, 공단에서 해당 승강기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승강기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법 제17조 제3항, 규칙 제31조 제1항).

- ㉠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 안전기준”이라 한다)
- ㉡ 승강기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 ④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법 제17조 제4항).

## (2)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1)의 ①에도 불구하고 승강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법 제18조, 영 제21조, 규칙 제35조·제36조).

- ① 연구·개발, 전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 ②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 ③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
- ④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에서 승강기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수입업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시험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인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 ㉡ 국제표준화기구의 승강기에 대한 인증제도에 따라 공인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 ⑥ 승강기를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20대 이하의 승강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하여 한 번에 통관하거나 출고하는 경우로 한다)
- ⑦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면제의 구분**

1. 위 ①부터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2. 위 ④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모델승강기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3. 위 ④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영 제20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4. 위 ⑤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시험의 면제
5. 위 ⑥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심사의 면제
6. 위 ⑦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제
  - 가. 승강기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 나. 제20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3) 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① 정기심사

- ㉠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1)의 ①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가 (1)의 ③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에 대한 심사(승강기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승강기정기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19조 제1항, 영 제22조 제1항·제3항).
- ㉡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정기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강기정기심사의 심사주기 도래일 90일 이전에 승강기정기심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승강기정기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규칙 제38조 제1항·제3항).
- ㉢ 위 ㉡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과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재심사를 요청받은 공단은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규칙 제22조 제4항·제5항).

**승강기의 정기심사의 확인사항**

1. 해당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지 여부
2. 해당 승강기를 제조하는 공장의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 체계가 승강기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 여부
3. 해당 승강기에 대한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실시 및 그 기록의 작성·보관 여부
4.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자체심사**: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법 제19조 제2항, 규칙 제39조 제2항).

③ **조치사항**

- ㉠ 공단은 승강기정기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지 않거나, 승강기의 제조 체계가 승강기공장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임을 확인하면 그 확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규칙 제38조 제6항).
- ㉡ 공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규칙 제38조 제7항).

- ㉠ 승강기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자
- ㉡ 자체심사를 하지 않은 자
- ㉢ 자체심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4)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승강기안전인증표시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승강기에 승강기안전인증표시 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20조 제1항·제2항).

- ㉠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 ㉡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의 표시

② 승강기안전인증표시 등을 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규칙 제40조 제2항).

- ㉠ 국내에서 제조하는 승강기: 출고 전
- ㉡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승강기: 통관 전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강기안전인증표시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20조 제3항).

- ㉠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 ㉡ 승강기의 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 ㉢ 승강기의 대여업자
- ㉣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또는 설치공사업자
- ㉤ 승강기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

④ 위 ③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를 판매·대여·판매중개·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법 제20조 제4항).

#### (5)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승강기안전인증표시 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승강기안전인증표시 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법 제21조 제1항).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 승강기안전인증표시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 제17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제19조 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 제19조 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결과 제17조 제3항 제2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 제19조 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제19조 제2항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 ㉞ 제25조 제2항 또는 제2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㉟ ㉠부터 ㉞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승강기안전인증표시 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①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승강기안전인증표시 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①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이 취소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법 제21조 제2항·제3항).

### 3 안전인증의 대행

#### (1) 안전인증의 대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다음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법 제22조 제1항).

- ㉠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 제23조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② 위 ①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에 활용할 수 있다(법 제22조 제2항).

- ㉢ 승강기안전부품: 제11조 제3항 각 호의 기준
- ㉣ 승강기: 제17조 제3항 각 호의 기준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①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승강기안전부품과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22조 제3항).

**(2)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23조 제1항).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인증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 또는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제2항).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부품안전인증을 한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부품안전인증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 부품안전인증을 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 ①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 부품안전인증을 하는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 ㉦ 제7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 제76조에 따른 수수료를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은 경우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위 ②의 ㉤에도 불구하고 ①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업무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정이 취소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법 제23조 제3항·제4항).

**(3)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행정안전부장관은 (2)의 ② ㉢부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법 제24조 제1항·제2항, 영 제24조 제1항).

#### 4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 등

##### (1)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14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강기안전부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 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법 제25조 제1항).

- ㉠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 ㉡ 제11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 ㉢ 제11조 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 제1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에 부품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 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 ㉥ 제14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 ㉨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20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강기의 판매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법 제25조 제2항).

- ㉠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 ㉡ 제17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 ㉢ 제17조 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㉔ 제20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 승강기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 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 ㉖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14조 제3항 제6호 또는 제20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① 또는 ②에 따른 판매중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부담한다(법 제25조 제3항).

## (2)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행정안전부장관은 판매중지 등만으로는 그 위해(危害)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법 제26조).

- ① 판매중지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②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교환, 대금 반환 또는 수리
- ③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 1 승강기의 설치 등

#### (1) 승강기의 설치신고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승강기의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7조, 규칙 제46조).

#### (2) 승강기의 설치검사

-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법 제28조 제1항).
- ②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28조 제2항).
- ③ 위 ①과 ②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법 제28조 제3항).

#### (3) 승강기의 안전관리자

-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29조 제1항).
- ② 위 ①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법 제29조 제2항).

- ㉠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 ㉡ 승강기의 종류
-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관리주체는 위 ①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29조 제3항).

- ④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공단이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법 제29조 제5항, 규칙 제51조).
- ⑤ 관리주체(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법 제29조 제4항).

#### (4) 보험가입

-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법 제30조).
- ② 책임보험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영 제27조 제1항).
- ③ 책임보험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영 제27조 제2항).

- ㉠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
- ㉡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
- ㉢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 ④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영 제27조 제3항).

- ㉠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 다만,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 ㉢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별표 6 제2호에 따른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 ㉣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1천만원
- ㉤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 및 ㉡의 금액을 더한 금액

- ㉞ 부상한 사람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㉝ 및 ㉞의 금액을 더한 금액
- ㉟ ㉝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㉟의 금액에서 ㉞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⑤ 관리주체는 그가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회사 등 보험상품을 판매한 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또는 재가입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영 제27조 제4항).

## 2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

### (1) 승강기의 자체점검

-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법 제31조 제1항).
- ②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영을 중지하여야 한다(법 제31조 제2항).
- ③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법 제31조 제3항).

- ㉠ 제1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 ㉡ 제32조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 ㉢ 제32조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 ㉣ 그 밖에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 ④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법 제31조 제4항).
- ⑤ 위 ③의 ㉣에 해당하는 경우의 관리주체는 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해 3개월의 범위에서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영 제30조 제2항).

- ㉠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
- ㉡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 ㉢ 최근 1년 이내에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승강기

㉣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는 위 ㉠에 따라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관리주체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영 제30조 제3항).

## (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법 제32조 제1항).

### ①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 검사주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1년(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을 말한다)으로 한다(규칙 제54조 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규칙 제54조 제2항).

-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6개월
- ㉢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6개월
- ㉣ 다음의 엘리베이터: 2년
  - 1) 화물용 엘리베이터
  - 2)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 3)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Dumbwaiter)
- ㉤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2년

㉥ 검사기간: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규칙 제54조 제4항).

㉦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규칙 제54조 제5항).

㉔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연기된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규칙 제54조 제6항).

② 수시검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 ㉑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엘리베이터를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변경한 경우
    - 1)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 2)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 3) 피난용 엘리베이터
  - ㉒ 그 밖에 검사의 기준이 같은 수준으로 승강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로서 수시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㉒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 ㉓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㉑의 ㉒의 경우는 제외한다)
- ㉔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③ 정밀안전검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㉔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㉑ ㉑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또는 ㉑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㉒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 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㉓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 ㉔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법 제32조 제2항, 규칙 제56조).

3) 안전검사의 연기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법 제32조 제3항).

- ①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②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한다)
- ③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안전검사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법 제33조).

- ① 제1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안전검사
- ②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 (4) 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와 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법 제34조 제1항).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법 제34조 제2항).
- ③ 위 ①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②에 따른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 또는 표지를 승강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법 제34조 제3항).
- ④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건축설비(승강기에 한정한다)의 유지·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법 제35조).

## 3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다음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법 제36조 제1항).

- ㉠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 제37조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①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승강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36조 제2항).

#### 4 승강기의 유지관리업

##### (1)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 ①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법 제39조 제1항·제3항).
- ②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개인은 자산평가액)이어야 하고, 대통령령의 별표 8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별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법 제39조 제2항, 영 제33조).
- ③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39조 제4항).

##### (2)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법 제40조).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⑤ 제4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① 또는 ②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⑥ 대표자가 ①부터 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3) 표준유지관리비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당사자(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유지관리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계약당사자가 이를 활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법 제41조 제1항).

### (4)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및 관리대수의 상한

①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도급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가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42조, 영 제34조).

- ㉠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유지관리 업무의 2분의 1
- ㉡ 유지관리 업무 중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만을 하도급하는 경우: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의 2분의 1
- ㉢ 유지관리 업무 중 자체점검 업무만을 하도급하는 경우: 자체점검 업무의 3분의 2

② 유지관리업자는 기술력, 승강기의 지역적 분포 및 기술인력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한 유지관리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43조 제1항, 규칙 제66조).

- ㉠ 등록된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이 유지관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시·도에 설치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경우: 기술인력의 수에 100을 곱한 대수
- ㉡ 등록된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이 유지관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없는 시·도에 설치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경우: 기술인력의 수에 90을 곱한 대수
- ㉢ 제조·수입업자인 유지관리업자가 ㉠ 또는 ㉡에 따른 승강기 대수 중 일부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와 공동으로 유지관리하는 경우: ㉠ 또는 ㉡에 따른 승강기 대수에 50퍼센트를 곱한 대수

③ 유지관리업자는 도급계약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43조 제2항).

### (5) 유지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시·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①·② 또는 ④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거나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44조).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 ②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유지관리업을 한 경우
- ③ 제39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④ 제40조 각 호(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⑤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 ⑥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우
- ⑦ 제4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주체의 용역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 ⑧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제48조 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6) 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① 시·도지사는 위 (5)의 ①·③ 또는 ⑤부터 ⑧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45조 제1항).
- ② 시·도지사는 ①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법 제45조 제3항).

## 5 승강기의 운행 및 사고 조사

### (1)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승강기 이용자는 승강기를 이용할 때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법 제46조, 영 제36조).

- ①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아니할 것
- ②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
- ③ 정원을 초과하는 탑승 금지
- ④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화물의 적재 금지
- ⑤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승강기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2)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관리주체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용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운행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승강기를 조작하게 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법 제47조, 규칙 제68조).

## (3)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1) 관리주체(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48조 제1항, 영 제37조).

- ① 다음의 중대한 사고
  - ㉠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 ㉡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 ㉢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 ② 다음의 중대한 고장
  - ㉠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장
    - ㉠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 ㉡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 ㉢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2) 누구든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48조 제2항).

3)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1)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법 제48조 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고받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법 제48조 제4항).

#### (4)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3)의 3)에 따른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중대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사고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법 제49조 제1항).
- ②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영 제39조).

- ㉠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 대학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등 승강기 분야 관련 과목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 ㉤ 공단,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최근 3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
- ㉥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설치 또는 유지관리 관련 업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3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①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도지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법 제49조 제2항).

#### (5)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50조 제1항).

- ㉠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 ㉡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승강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운행정지 사유와 운행정지 기간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법 제50조 제2항, 영 제42조).

- ㉠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의 운영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 제32조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 ㉥ 그 밖에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는 ②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발급받은 표지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소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법 제50조 제3항·제4항, 규칙 제71조 제2항).

- ㉠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출입문의 중앙
- ㉡ 에스컬레이터: 탑승하는 승강장 입구 바닥의 중앙
- ㉢ 휠체어리프트: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소
  - ㉠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출입문의 중앙
  - ㉡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제어반 개폐문의 중앙 및 운반구 바닥의 중앙

## 제5장 보 칙

###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의 추진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며,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법 제55조).
- ②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법 제63조),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64조).

#### (2) 임원 및 자금조달과 감독

-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각각 두며,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법 제58조).
- ②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달하며(법 제59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법 제60조).

- ㉠ 정부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 ㉡ 제57조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 ㉢ 자산운영수익금
- ㉣ 그 밖의 부대사업 수입금

-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61조 제2항).

### 2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 등

#### (1)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마다 고유한 번호(이하 “승강기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그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를 해당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영 제60조 제1항).

② 위 ①에 따른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표지를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아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해야 한다 (영 제60조 제2항·제3항).

**(2)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입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그 결과를 인증 또는 검사 후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영 제59조).

- ① 부품안전인증
- ② 승강기안전인증
- ③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 ④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3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1)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정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다음의 산업(이하 “승강기 안전산업”이라 한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승강기 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술 개발 또는 사업 수행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법 제65조).

- ① 제조업 또는 수입업
- ② 승강기설치공사업
- ③ 유지관리업
- ④ ①부터 ③까지 관련된 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

**(2)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안전관리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그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안전관리우수 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법 제 66조).

### (3) 협회의 설립

- ①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 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승강기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법 제68조).
- ②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69조 제1항).
-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71조).

### (4) 실태조사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운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74조 제1항).

- ㉠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 ㉡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 ㉢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강기

- ②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74조 제2항).

- ㉠ 제조·수입업자
- ㉡ 유지관리업자

### (5) 청문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법 제77조 제1항).

- ㉠ 제23조 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 ㉡ 제37조 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 ㉢ 제53조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②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법 제77조 제2항).

- ㉠ 제9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취소
- ㉡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

(6)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법 제79조).

- ①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 ② 지정검사기관의 임직원
- ③ 제49조 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